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 강대식 · 임이자 · 임종득

김예지 • 곽규택 • 김승수

서범수 · 최은석 · 강승규

김희정 • 박성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

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를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을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이전지역인재가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다른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라 한다)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전지역인재와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의 구분 및 범위, 이전공 공기관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도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이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 ①
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	
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	
나 졸업예정인 <u>사람을 이전공</u>	사람(이하 "이전지
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	역인재"라 한다)을 신규 채용인
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	<u>원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u>
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	
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제외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에 따른 채용비율에 이전지역 인재가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 역 외 다른 지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서 「고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 서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 라 한다)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 만, 이전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 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

	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u>다.</u>
<u><신 설></u>	③ 이전지역인재와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의 구분 및 범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②</u> ~ <u>⑥</u> (생 략)	<u>④</u> ~ <u>⑧</u>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